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5일까지에서 2025년 1월 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의 존속기한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및 지방산림청 인력 8명(8급 8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지방산림청 인력 7명(8급 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소수직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산림항공본부에 인력 2명(6급 2명)은 종전의 인력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고, 지방산림청에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은 종전의 인력 10명(8급 1명, 9급 9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복수직렬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단서 중 “8명”을 각각 “7명”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69”를 “68”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4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하고,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 6의2 항공주사 14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 1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며, 방송통신서기보 “11”을 “10”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20”을 “1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54”를 각각 “753”으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1 다음에 “운전주사 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6”을 “115”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5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5”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87”을 “186”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86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1”을 신설하

고, 공업서기 “6”을 “5”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8”을 “7”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1”로 하며, 운전서기보 “28”을 “23”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및 제45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2023년 1월 5일”을 “2025년 1월 5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및 제46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2023년 2월 1일”을 “2025년 2월 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2월 1일”을 “2025년 2월 1일”로 하고, “2023년 2월 2일”을 “2025년 2월 2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

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분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분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별표 6의4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및 별표 7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각각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u>8명</u>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8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 ⑩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7명</u> ----- <u>7</u> <u>명</u> ----- --. ⑥ ~ ⑩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설되는 임업통상팀은 2023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2023년 2월 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별표 6의4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 2025년 1월 5일-----.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2025년 2월 1일-----
-----.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u>1명 및 별표 7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8명은 각각 2022 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 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에 따 른 정원으로로서, 이 규칙 시행으 로 직렬이 조정되는 정원을 포 함한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 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 은 <u>2023년 2월 1일까지</u> 존속하 고, <u>2023년 2월 2일</u> 이후에는 그 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 <u>2025년 2월 1일</u>----- -, <u>2025년 2월 2일</u>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69</u>	<u>68</u>	-1
•	•	•	
•	•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시설사무관	1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u>또는 기록연구관</u>			
•	•	•	
•	•	•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4		
<u>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u>	<u><신 설></u>	<u>1</u>	+1
<u>기록연구사</u>			
•	•	•	
•	•	•	
<u>기록연구사</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항공주사	14		
<u>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1</u>	+1
<u>운전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11</u>	<u>10</u>	-1
•	•	•	
운전서기보	<u>20</u>	<u>19</u>	-1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4</u>	<u>753</u>	-1
일반직 계	<u>754</u>	<u>753</u>	-1
·	·	·	
·	·	·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1		
<u>운전주사</u>	<u><신 설></u>	<u>5</u>	+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6</u>	<u>115</u>	-1
<u>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u> <u>또는 공업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u>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5</u>	+5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187</u>	<u>186</u>	-1
<u>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u> <u>공업서기</u>	<u><신 설></u>	<u>1</u>	+1
공업서기	<u>6</u>	<u>5</u>	-1

방송통신서기	<u>8</u>	<u>7</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15</u>	<u>11</u>	-4
운전서기보	<u>28</u>	<u>23</u>	-5
·	·	·	
·	·	·	